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200 제출연월일: 2024. 6. 28.

부

제 출 자: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
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혅 했 개 정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조사)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 시 ·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 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시장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 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 |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① (생 략)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해당 지방자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	
사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